제353회 서초구의회(임시회)

「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[ 서초구청장 제출 (의안번호 제39호) ]

2026. 10.

##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
(행정복지위원회)

# 의안검토보고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**의안번호** | 제39호 | | |
| **의 안 명** |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| |
| **제 출 자** | 서초구청장(자치행정과) | **제출연월일** | 2026.09.23. |
| **위 원 회** | 행정복지위원회 | **전문위원** | 김 성 훈 |

## Ⅰ 제안내용

### 1. 제안이유

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'위치' 변경 및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'관할구역' 명칭 현행화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서초3동 및 반포본동주민센터 위치 변경〔별표〕

나.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관할구역 명칭 현행화〔별표〕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(사무소의 소재지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평가대상 제외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5)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# Ⅱ 검토의견

## 1. 개정취지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동주민센터의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관할구역 명칭의 현행화를 통해 주민의 혼선을 없애고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임.

## 2. 법적근거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[1](사무소의 소재지)

## 3. 주요 개정조례안 검토

○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서초구 동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의 현행화를 통해 주민의 혼선을 없애고자 현행 조례 “〔별표〕 동주민센터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”을 개정하는 것으로,

- 서초3동주민센터의 경우, 당초 “반포대로34, 2층(서초동 1459-12)”

1) 제9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·면·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면·동은 행정면·행정동(行政洞)을 말한다.
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에서 2026. 9. 14. “반포대로28길 7(서초동 1542-11)”로 이전하였고,

[ 서초3동 열린문화센터 현황 ]

○ 사업기간 : 2020. 1. ~ 2026. 9.
○ 규 모 : 연면적 6,953.5㎡ (지하5층 ~ 지상11층)
○ 주요시설 : 서초3동주민센터(자치회관), 서초평생학습관, 서초시니어라운지, 서초·교대역 상권활성화 지원센터, 서초구자원봉사센터, 서초문화재단 축제사무국 등

- 반포본동주민센터의 경우, 당초 “신반포로3길 8(반포프라자종합상가)”에 위치하였으나, 반포래미안트리니원아파트[2](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)가 재건축 완공되어 2026. 8. 10일자로 임시청사(신반포로 20, 117동 1층)로 이전하여 위치 현행화가 필요함.

※ 반포본동주민센터의 현 청사는 임시청사로, 향후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아파트[3](구 반포주공1단지 1·2·4주구) 완공 시점에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임.

- 관할구역 표기 개정과 관련하여,

· 반포2동주민센터의 경우, “반포주공1단지”가 “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”라는 명칭으로 재건축 공사 중에 있고,

· 반포3동주민센터의 경우, “신반포9차”가 “메이플자이[4]”라는 명칭으로 2026. 6월 완공된 바, 각각 표기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.

## 4. 종합검토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동

2) 17개동 2,091세대
3) 55개동 5,002세대
4) 29개동 3,307세대

주민센터 설치 조례」 〔별표〕의 개정을 통해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.